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2016.8.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가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주기적 신고제도와 일정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0호, 2016. 8. 4.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교육의 신청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 등록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시 기재란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4제3항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거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신청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강사의 자격 등 건설업 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3(하도급계획의 제출)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의 신청내용란 중 "재교부"를 "재발급(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개정서식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일반현황	상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 표 자(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납 입 자 본 금				투 자 비 율 (외국인의 경우)				
업종	종 류								
	등 록 번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등 록 일								
인적현황	임 원 현 황				기 술 인 현 황				
	성명	생년월일	직위	등기일 퇴사일	성명	생년월일	직위	기술등급 자격현황	입사일 퇴사일
시설·장비현황	시 설 (사무실 포함) 현 황				장 비 현 황				
	시설명	실면적	주 소		소유형태	장비명	등록번호	규격	취득일자
자산현황	대 차 대 조 표 (기 준 일 :)	자 산 (계 :)		부 채 (계 :)		자 본 (계 :)			
		유동 자산	고정 자산	유 동	고 정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자본조정
	손 익 계 산 서 (시 작 일 : 종 료 일 :)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 매 비 와 관 리 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이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법 인 세 등	당 기 순 이 익

(뒤쪽)

변경사항 (상호, 대표자, 법 인등록번호, 주소 등)	신 고 일	신 수 리 고 일	변 경 내 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행정처분 (시정지시·시정명 령·영업정지·과 징금· 등록말소·과태료 등)	처 분 내 용	사 유	처 분 근 거	처 분 기 관	처 분 일	비 고 (주민등록번호)

신고사항 (양도·합병· 상속신고)	신고일	신 고 수 리 일	구 분	업 종	업 종 등 록 번 호	양수인 (합병,상속)	양도인 (파합병, 피 상속)	양도일 (합병,상속)

폐 업 신고사항	신고일	신고수리일	폐업업종	업종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건설업 등록 증 (등록수첩) 교부사항	매체종류	구 분	업 종	등록번호	교부일	수령인
	[]서류 []전자카드					

유의사항						
------	--	--	--	--	--	--

행정처분(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등) 기재사항 중 비교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화를 위해 등록말소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1. 업종 :
2. 등록번호 :
3. 상호 :
4. 대표자 :
5. 주된 영업소 소재지 :
6.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7. 국적(소속 국가명) :
8. 등록일자 :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뒤쪽)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행 정 처 분 사 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처 분 내 용	사 유	처 분 기 관 (처 분 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 설 업 교 육 사 항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명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건설업등록수첩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주 된 영 업 소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국 적 (소 속 국 가 명)		등 록 일 자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 인

105mm×148mm[백상지 150g/㎡]

(제2쪽)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제3쪽)

행정처분사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명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제4쪽)

시 공 능 력

연 도	공사의 종류	금 액 (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공사금액의 하한

연 도	공사의 종류	금 액 (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제1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 공종:	건축허가(신고)번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공공 []민간(법인) []민간(개인)	기관명(상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산재보험		-가입 여부: []예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일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예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일자:		
도급방법		[]단독도급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장기계속 []계속비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일반				
입찰방법		[]적격심사 []최저가 []종합심사 []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기타				
사전입찰참가심사(PQ) 여부		[]예 []아니오	추정가격	원	예정가격	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2. 도급계약

가.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말합니다)

구분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공사기간(일)	도급금액	낙찰률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변경 사유
도급계약(총공사)											
당차년	()차										
	()차										

나. 도급업체(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모두 적습니다)

구분	상호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변경 사유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297mm×210mm[백상지 150g/㎡]

다. 보증금(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을 말하며, 예치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그 밖에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치업체	예치일	보증종류	예치방법	보증을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번호	보증서발급일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라. 공사대금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회	준공금	준공 검사 후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일 이내		

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사항

가. 공사대금수령 사항

구분	수령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수령일	선금정산액	수령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하도급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지급일	선금정산액	지급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4. 공시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구분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담당 업무
당초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당초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1차 변경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2차 변경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나. 하도급 계약(재하도급을 포함합니다)

(1) 하도급계약

원도급업체명	하도급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주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협력업체등록연월일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내용				대금 지급주체	선급금		기성부분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⑩발주자 서면 승낙서
										영종	도급금액(하도급 *%)	하도급 계약금	하도급 대금		선급금	⑨지급기한	지급주기	⑨지급기한	⑨지급방법	교부여부	⑨교부내용	⑨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미등록					원	원	원	☐ 발주자 ☐ 수급인	원	[]월 1회			☐ 교부 ☐ 교부면제				
						[]미등록					원	원	원	☐ 발주자 ☐ 수급인	원	[]월 1회			☐ 교부 ☐ 교부면제				

(2) 재하도급 계약

원도급업체명	하도급업체명	재하도급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주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재하도급내용					⑩수급인 서면 승낙서
										영종	⑩하도급금액	⑩재하도급부분금액	⑩재하도급부분비율	⑩재하도급승낙사유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제4쪽)

다. 건설기계대여업체(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대여받은 업체	대여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⑩건설기계명	⑪대여기간	⑫대여금액
						원
						원
						원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납품받은 업체	납품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주요 제품명	납품금액
						원
						원
						원

※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작성방법〉 1. 건설공사대장 통보(가제)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 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세부 공종	일반도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고속화도로	저층아파트(5층 이하)	산업생산시설
	고속도로	고층아파트(6층 ~ 15층)	원자력발전소
	도로교량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화력발전소
	철도교량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열병합발전소
	댐	상가·백화점·쇼핑센터	수력발전소
	항만	사무실빌딩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공항	오피스텔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일반철도	인텔리전트빌딩	하수종말처리장
	고속철도	호텔·숙박시설	폐수종말처리장
세부 공종	지하철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도터널	관공서건물(12층 이상)	
	철도터널	학교	조 경 공 사
	간척	병원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전통양식건축	수목원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공원의 조성공사
	상수도 1천mm 이상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그 밖의 조경
	상수도 1천mm 이하	경기장·운동장	
	정수장	전시(展示)시설	
	하수도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세부 공종	택지조성	공장, 작업장용 건물	
	공업용지 조성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그 밖의 토목시설	위험물저장소	
세부 공종		그 밖의 건축물	
⑧건축허가(신고)번호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2. 공사참여자

가. 현장기술인

④담당 업무 :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 나. 하도급계약(재하도급포함)

(1) 하도급계약

⑤선급금지급기한: 계약일부터 ()일 이내

⑥가성부분금 지급기한: 목적물수량일부터 ()일 이내

⑦가성부분금 지급방법: 현금 ()% 어음 ()%

⑧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률 등 보증서 내용을 적습니다.

⑨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적고, 이를 증빙하는 증빙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⑩발주자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동종 간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2) 재하도급계약

⑪하도급금액: 해당 재하도급공사를 준 해당 하도급자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말합니다.

⑫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부분 금액: 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을 준 부분금액을 말합니다.

⑬재하도급부분 비중: 재하도급부분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⑭재하도급승낙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⑮수급인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⑯건설기계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⑰대여기간 및 ⑱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하도급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제1쪽)

공사명		(원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 공종: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 민간(개인)	기관명(상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	상호		법인(주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 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 예 [] 아니오(□ 직불합의, □ 1천만원미만, □ 회사채평가 A0등급이상)		
산재보험		-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일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일자: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 [] 기타				

2. 하도급계약 내용

가. 하도급계약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공사기간(일)	②원도급금액 (하도급부분)	③하도급 계약금액	④하도급률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 일	변경 후 준공 일	변경 사유

나.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하도급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변경 사유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다. 4대보험료 등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노무비	원	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반영요율	(%)	반영요율	(%)	반영요율	(%)	반영요율	(%)	반영요율	(%)
금액										
부담방법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라. 보증금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금금보증, 하자보수보증사항을 말하며, 예치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그 밖에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치업체	예치일	보증종류	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번호	보증서발급일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마. 공사대금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회	준공금	준공 검사 후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일 이내		

3. 공사대금수령사항

구분	수령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수령일	선금정산액	수령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금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4. 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	배치기간	⑤담당 업무
☐ 하도급업체 ☐ 재하도급업체					~	
☐ 하도급업체 ☐ 재하도급업체					~	
☐ 하도급업체 ☐ 재하도급업체					~	

나. 재하도급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 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재하도급내용				⑩대금 지급주체	⑪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⑫수급인 서면 승낙서
									당초	⑩하도급 금액 (재하도급 부분)	⑪ 재하도급 계약금액	⑫ 재하도급 금액	⑬ 재하도급 승낙사유	교부여부	교부 내용	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원	원	원		☐ 교부 ☐ 교부금액			
										원	원	원		☐ 교부 ☐ 교부금액			

(제3쪽)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대여받은 업체	대여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㉑건설기계명	㉒대여기간	㉓대여금액
						원
						원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납품받은 업체	납품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주요 제품명	납품금액
						원
						원

※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작성방법〉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작성)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 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세부 공종	일반도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고속화도로	저층아파트(5층 이하)	산업생산시설
	고속도로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원자력발전소
	도로교량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화학발전소
	철도교량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열병합발전소
	댐	상가·백화점·쇼핑센터	수력발전소
	항 만	사무실빌딩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공 항	오피스텔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일반철도	인텔리전트빌딩	하수종말처리장
	고속철도	호텔·숙박시설	폐수종말처리장
세부 공종	지하철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도로터널	관공서건물(12층 이상)	
	철도터널	학교	조 경 공 사
	간 척	병원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전통양식건축	수목원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공원의 조성공사
	상수도 1천㎜ 이상	물	그 밖의 조경
	상수도 1천㎜ 이하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정수장	경기장·운동장	
	하수도	전시(展示)시설	
세부 공종	택지 조성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업용지 조성	공장·작업장용 건물	
	그 밖의 토목시설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2. 하도급계약 내용

②원도급금액(하도급 부분)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원도급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하도급률 하도급계약금액을 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⑥담당 업무: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

나. 재하도급계약

⑥하도급금액(재하도급부분): 해당 재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준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⑦재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⑧재하도급률: 재하도급금액을 하도급금액(재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⑨재하도급승낙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⑩대금지급주체: 하도급 업체 지불, 원도급업체 직접 지불합니다.

⑪대금지급보증서 교부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물 등 보증서내용을 작성합니다.

⑫수급인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말하며 스캔 파일 등으로 첨부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⑬건설기계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⑭대여기간 및 ⑮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사 개 요	공 사 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입찰금액		원					
하 도 급 예 정 계 획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 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③원도급 내역금액	④하도급계약 예정금액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③ 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예정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할 공사에정금액을 말한다.

